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89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 3).

법률 제 호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"그 밖에 환경부장관"을 "환경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녹색제품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의3(녹색구매지원센터의	제17조의3(녹색구매지원센터의		
설치 • 운영) ① (생 략)	설치・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	②		
업을 수행하며, 환경부장관은			
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			
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			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	5. <u>환경부장관</u>		
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			
관한 사업			
<u><신 설></u>	6. 그 밖에 녹색제품 보급 촉진		
	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		
	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